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www.police.go.kr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자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교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피부양 노부모

①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②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 ③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현재 65세 이상인 자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대상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원 한도 매칭	
유자녀	장학금	초등	분기 20만원
		중등	분기 30만원
		고등	분기 40만원
피부양 노부모	무이자 생활자금대출	월 20만원	
	피부양보조금	월 20만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 지원금액 : 월 20만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동서류(6종)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피부양 노부모
- 지원금액 : 월 20만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동서류 (6종)
 -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 피부양 사실 확인서 1부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초·중·고등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및 피해 당사자
- 지원기준

성적 장학금 (중·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목성취평가 산출시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의 평균이 D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 혼합산출시 : 보통교과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0 이내에 해당하고, 전문교과의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의 평균이 D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특기 장학금 (초·중·고등)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은 자 또는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에서 상을 수상한 자 ※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거나, 수상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학교장 추천 장학금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산출되지 않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학급)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장학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 지원금액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연2회)	지원시기(연4회)
초등학교	분기 20만원	(1학기) 3.2~4.30	(1학기) 4, 5월
중 학생	분기 30만원	(2학기) 9.1~10.31	(2학기) 9, 10월
고등학교	분기 40만원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수상실적이 있을 시 상장 사본 1부
- ※ 교육장,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대출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부터 만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대출금액 : 월 20만원 (매월 말 지급)

• 대출조건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0세가 되는 달까지)
※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상환기간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희망시 일시상환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앞,뒤) 사본 1부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부터 만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6만원까지 동일금액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 18세 되는 달까지

- 지원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만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생인 자에 한함) 1부



지원신청 공통서류 및 증명서류 발급 안내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①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예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⑥ 예금통장 사본 1부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확인원	해당 경찰서 손해보험사

후유장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결정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생활형편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정서적 지원 안내

국도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에 다양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우울증, 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에게 심리상담, 심리검사,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가정
- **운영기간** : **신청** 4월 **서비스기간** 5~11월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가정의 현관, 거실, 화장실 등 공간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으로 재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재활보조금 수혜자 중 신청한 가정
- **선정방법** : 지역본부별로 서류 및 현장심사 후 선정
- **운영기간** : **신청** 4~5월 **개선기간** 4~11월

TS희망봉사단

전국의 희망봉사단이 지원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병원동행, 외출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희망봉사단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 **운영기간** : **신청** 2월 **활동기간** 3~12월

지원가정 출산 및 상조용품 지원

출산 지원가정의 생후 24개월 이내 유아 대상으로 옷·유모차 등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상조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화, 종이컵 등 일회용품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해당 지역본부 또는 본사로 신청

유자녀를 위한 정서적 지원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청년멘토 활동에 관심있는 대학(원)생을 모집하여 유자녀와 1대1로 매칭하여 학습지원, 상담, 문화활동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가정 유자녀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 **운영기간** : **신청** 2월 **활동기간** 3~11월

국가자격취득 지원

국가자격 취득비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 성장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지원가정 유자녀 중 만16~18세 청소년
※ 고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이하
- **지원금** : 1인당 최대 15만원
(단, 자격증 취득한 경우만 해당)
- **지원기간** : 4~12월
- **신청방법** : 본시 및 지역본부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여름·겨울 체험캠프

또래 친구와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체험활동 추진

- **지원대상** : 지원가정 유자녀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 **운영기간** : **여름캠프** 6월 모집, 8월 시행
겨울캠프 10월 모집, 12월 시행

국가미래산업 체험

장래 진로 결정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국가미래산업 체험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지원가정 유자녀
- **운영기간** : **모집** 4월 **체험시기**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부명	전 화	핸드폰	팩 스
서울본부	02-309-5177	010-8512-7459	02-309-2012
경기남부본부	031-298-5006	010-8518-7459	031-298-5025
대전충남본부	042-833-4323	010-8539-7459	0502-384-5396
대구경북본부	053-794-3814	010-8576-7459	0502-384-5406
부산본부	051-324-2464	010-8628-7459	051-324-2465
광주전남본부	062-606-7638	010-8712-7459	062-606-7645
경기북부본부	031-837-7601	010-8527-7459	0502-384-5368
인천본부	032-833-6700	010-8536-7459	032-833-5002
강원본부	033-261-5000	010-8546-7459	0502-384-5384
충북본부	043-266-9575	010-8562-7459	0502-384-5398
전북본부	063-214-4743	010-8735-7459	0502-384-5433
경남본부	055-294-2509	010-8649-7459	0502-384-5482
울산본부	052-256-9375	010-8692-7459	052-256-9376
제주본부	064-755-3110	010-8698-7459	064-723-3120
본사	054-459-7301~6		0502-384-5450

- **신청기간** : 지원제도별로 다름, 연중 수시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본부로 우편접수, 팩스, 방문 가능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서류 양식, 안내문 파일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asa.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홈페이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 무보험·행스니피카자 지원안내 : 0번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 2번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문의전화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지원신청 공통서류 및 증명서류 발급 안내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①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예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⑥ 예금통장 사본 1부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확인원	해당 경찰서 손해보험사

후유장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결정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생활형편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